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12호 2025. 10. 13. (월)

공 고

-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2
- 용당3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 독촉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1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홍보과 ☎ 061-270-8539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원도심 상가 임대료 지원 내용을 변화된 상권 환경과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도 축소 및 지원기간을 1년으로 변경하고 일몰제를 적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 원도심 재팬·차이나 타운 정책이 사실상 폐기된 상태이므로 관련 지원 근거를 없애고 외국인 정의 조항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원도심 재팬·차이나타운” . “외국인” 관련조항 삭제
(안 제3조, 제5조, 제7조제2항제5호, 제10조)
- 임대료의 지원 업종 제한 조항 추가(안 제7조제2항제3호)

- 임대료의 지원 중 기간 변경 및 종료 일자 조항 추가(안 제9조제1항, 제2항)
- 임대료 지원기준 변경(〔별표3〕)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5.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감사실)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대상 여부(기획예산과)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6. 예산사항 : 필요예산 감소

7. 입법예고 기간 : 2025. 10. 2. ~ 2025. 10. 22.(21일간)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9.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0월 22일까지 목포시장(도시유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 목포시 도시유산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8292), 직접 방문 등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 도시유산과(☎ 061-270-839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전단 중 “[별표 1]과 같으며, 재팬·차이나타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표 1]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문직종, 프랜차이즈 업종 등은 지원을 제한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4개월분”을 “12개월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대료 지원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별표 3] 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원도심 재팬·차이나타운”이란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의 거리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상가지대 및 거리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9. “외국인”이란 「목포시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제5조 (권역지정) 원도심 권역 및 기존 도심 재 활성화 구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으며, 재팬·차이나타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10·20, 2014·12·29	제5조 (권역지정) ----- ----- --[별표 1] 과 같다. <후단 삭제>
제7조 (지원범위) ① (생략) ② 재정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2. (생략)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별표1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업종과 이	제7조 (지원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조례 별표2에 해당하는 기타 업
종으로서 특화의 거리와 기존
도심재활성화 구역에 입주하여
영업하는 업체나 전라남도 유관
기관에 대한 임대료

4. (생략)

5. 원도심·재팬차이나타운내에
입주하여 영업하는 외국인에 대
한 건물수선비, 임대료,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의 일부비용

6. ~ 11.(생략)

③ (생략)

제9조 (임대료의 지원) 제7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임대료 지원은 제3
조제4호에 따른 기존 도심 재활성
화 구역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
른 특화의 거리에 신규 입주하여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영
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
과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영업 시작 후 3개월 이상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만, 전문직종, 프랜차이즈 업종
등은 지원을 제한한다.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 11.(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조 (임대료의 지원) ① -----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임대료를 별표 3과 같이 지원하되 24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라남도 유관기관의 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입주 1개월부터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 (외국인의 지원) 외국인이 원도심 재팬·차이나타운에 입주하여 영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물을 수선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제8조에 따라 지원하되, 최고 4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매월 임대료의 전액을 영업을 시작한 달부터 지원하되 24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3. 매월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도시가스 요금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24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12개월분-----

② 임대료 지원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한다.

<삭 제>

<현행>

[별표 3]<개정 2006.12.18, 2008.10.20, 2009.2.23, 2011.10.17>

임대료 지원기준(제9조 관련)

구 분	임대료 총액의 지 원 비 율	비 고
특화의 거리 및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 신규 입주	100분의 50	1. 전세임주자의 경우 전세금을 월 임대료로 환산하여 적용(임대보증금은 전세금으로 간주) 〔계산방법 : 계약(지불)한 전세금 × 한국은행이 고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정기예금) ÷ 12〕
원도심 재팬.차이나타운 입주 외국인	월 임대료 전액	2. 월 임대료는 최고 150만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안>

[별표 3]

임대료 지원기준(제9조 관련)

구 분	임대료 총액의 지 원 비 율	비 고
특화의 거리 및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 신규 입주	100분의 50	1. 전세임주자의 경우 전세금을 월 임대료로 환산하여 적용(임대보증금은 전세금으로 간주) 〔계산방법 : 계약(지불)한 전세금 × 한국은행이 고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정기예금) ÷ 12〕 2. 월 임대료는 최대 40만원~30만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 최대한도 : 2026년 40만원, 2027년 30만원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용당3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 독촉 통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0. 13.

목 포 시 장

1. 공고대상 : 46명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5. 10. 13. ~ 2024. 10. 27. (14일간)
3. 공고장소 : 목포시 시보,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목포시 용당3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 독촉 통지
5. 기타사항
 -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팀(☎061-270-36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용당3지구』 조정금 납부 독촉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조서

번호					징수액	소유자		반송사유	독촉기한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성명	주소		
1	용당동	946-73	대	160.3	3,717,700	강*기	***** 전라남도 목포시 소영길 **.*	폐문부재	2025.10.2.
2	용당동	970-226	대	227.1	8,174,800	강*표	***** 전라남도 목포시 동목포길 *	폐문부재	2025.10.2.
3	용당동	968-142	대	179.7	724,200	곽*자	***** 전라남도 목포시 동부로**변길 **	폐문부재	2025.10.2.
4	용당동	967-140	대	79.4	1,739,780	권*월	***** 전라남도 목포시 동목포길**변길 *	폐문부재	2025.10.2.
5	용당동	970-433	대	208.4	1,078,800	김*관	*****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 (용당동)	주소불명	2025.10.2.
6	용당동	936-23	대	109.8	13,696,400	김*심	***** 전라남도 목포시 소영길**변길 **.*	폐문부재	2025.10.2.
7	용당동	968-75	대	133.8	769,500	김*화	***** 전라남도 목포시 동목포길**변길 **	폐문부재	2025.10.2.
8	용당동	962-13	대	145.7	15,739,250	김*자	***** 전라남도 목포시 동부로**변길 *	폐문부재	2025.10.2.
9	용당동	968-109	대	170.4	4,023,200	김*택	***** 전라남도 목포시 동부로**변길 **.*	폐문부재	2025.10.2.
10	용당동	967-155	대	148.2	2,290,600	김*성	***** 전라남도 목포시 동목포길 **	폐문부재	2025.10.2.
11	용당동	945-13	대	97.5	1,525,500	문*준	***** 전라남도 목포시 동목포길 ***(용당동)	폐문부재	2025.10.2.
12	용당동	970-463	대	162.2	3,703,000	문*호	***** 전라남도 목포시 동부로**변길 **.*	폐문부재	2025.10.2.
13	용당동	967-344	대	176.8	2,540,400	박*심	***** 전라남도 목포시 동부로**변길 **	폐문부재	2025.10.2.
14	용당동	968-67	대	224.1	563,400	박*순	***** 전라남도 목포시 동부로**변길 **.*	폐문부재	2025.10.2.
15	용당동	967-381	대	204.1	1,971,150	박*혁	***** 전라남도 목포시 동부로**변길 **.*	폐문부재	2025.10.2.
16	용당동	968-110	대	149.5	1,070,000	박*자	***** 전라남도 목포시 동부로**변길 *	수취거절	2025.10.2.
17	용당동	962-12	대	265.1	6,909,870	박*정	***** 전라남도 목포시 노적봉길**변길 **.*, ***호	폐문부재	2025.10.2.
18	용당동	967-321	대	106.7	2,934,600	백*심	***** 전라남도 목포시 동부로**변길 *	폐문부재	2025.10.2.
19	용당동	968-139	대	126.6	4,108,800	변*진	***** 전라남도 목포시 동부로**변길 **	폐문부재	2025.10.2.
20	용당동	882-5	대	148.9	3,925,350	부*용	*****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 ***호	폐문부재	2025.10.2.
21	용당동	967-311	대	162.6	5,770,800	손*훈	***** 전라남도 목포시 동부로 **	폐문부재	2025.10.2.
22	용당동	967-284	대	179.1	7,344,450	안*천	***** 전라남도 목포시 동목포길**변길 *	폐문부재	2025.10.2.
23	용당동	968-111	대	150.8	5,536,000	오*호	***** 전라남도 목포시 동목포길**변길 **	폐문부재	2025.10.2.
24	용당동	962-51	대	39.7	5,406,900	위*준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장안천길 **	폐문부재	2025.10.2.
25	용당동	967-398	대	193.8	3,416,400	윤*자	***** 전라남도 목포시 동부로**변길 **	폐문부재	2025.10.2.
26	용당동	881-15	대	255.7	6,947,250	이*형	***** 전라남도 목포시 동부로**변길 **.*	폐문부재	2025.10.2.
27	용당동	967-357	대	185.2	7,497,600	이*숙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변길 **.*, ***호 (시티**)	폐문부재	2025.10.2.
28	용당동	967-428	대	151.4	3,759,000	이*애	***** 전라남도 목포시 동부로**변길 **	폐문부재	2025.10.2.
29	용당동	967-140	대	79.4	1,159,850	이*남	***** 전라남도 목포시 동목포길**변길 *	폐문부재	2025.10.2.
30	용당동	967-140	대	79.4	1,159,850	이*운	*****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변길 *, ***동 ***호	폐문부재	2025.10.2.
31	용당동	968-50	대	186.4	1,977,800	이*월	***** 전라남도 목포시 소영길 **, ***동 ****호	폐문부재	2025.10.2.
32	용당동	967-486	대	110.8	2,566,500	이*엽	***** 전라남도 목포시 동목포길 **	폐문부재	2025.10.2.
33	용당동	967-405	대	130.5	4,905,750	임*섭	***** 전라남도 목포시 서산로 **.*	수취인불명	2025.10.2.
34	용당동	968-106	대	167.7	4,579,600	장*기	***** 전라남도 목포시 동목포길**변길 *	폐문부재	2025.10.2.
35	용당동	967-115	대	108.4	3,760,000	장*자	***** 전라남도 목포시 동부로**변길 **	폐문부재	2025.10.2.
36	용당동	933-6	대	54.0	6,688,500	정*우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변길 **, ***동 ***호	폐문부재	2025.10.2.
37	용당동	967-303	대	186.0	2,192,500	조*성	***** 전라남도 목포시 동부로**변길 *	폐문부재	2025.10.2.
38	용당동	962-64	대	117.6	5,020,400	조*심	***** 전라남도 목포시 동부로 **	폐문부재	2025.10.2.
39	용당동	969-22	대	160.0	7,294,000	주*순	***** 전라남도 목포시 동부로 **	폐문부재	2025.10.2.
40	용당동	967-390	대	173.5	1,991,250	주식회사**컴퍼니	*****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가곡길 **	폐문부재	2025.10.2.
41	용당동	970-458	대	163.3	1,840,400	차*배	***** 전라남도 목포시 동목포길**변길 **	폐문부재	2025.10.2.
42	용당동	936-29	대	218.0	1,815,000	천*영	*****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로***변길 **	폐문부재	2025.10.2.
43	용당동	962-31	대	206.5	1,863,620	최*태	*****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로**변길 *, ***동 ***호	폐문부재	2025.10.2.
44	용당동	927-26	대	181.8	3,488,070	홍*영	*****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변길 **.*	폐문부재	2025.10.2.
45	용당동	927-26	대	181.8	3,488,070	홍*기	*****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중부로 *** 안좌면	폐문부재	2025.10.2.
46	용당동	962-12	대	265.1	6,909,870	홍*희	***** 전라남도 목포시 노적봉길**변길 **.*, ***호(축후동, 한성리지빌)	폐문부재	2025.10.2.